

- ◆ 이 지침은 가이드 라인으로써 해당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되, 본 지침보다 엄격한 방역 당국의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 ◆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개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6판)

2023. 6.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



목 차



I.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1. 코로나19 개요	1
2. 목적	3
3. 기본방향	3
II.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4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4
2. 확진자 및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복무관리	4
3. 확진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4
4.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5
5. 소독 및 위생·청결 등	6
6. 회의·교육 및 출장 관리	7
III.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8
1. 유연근무제 활용	8
2. 휴가 및 휴업 관리	8
3. 가족돌봄 휴가	9
4. 백신 접종자 휴가 관리	9
IV. 코로나19 관련 Q&A	10



참고 자료



◆ 참고자료는 지침 배포일 기준 자료이며, 개정된 지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1.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	16
2.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31
3.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37
4. 확진환자 및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38
5.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46
6. 콜센터 안내	47
7.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23.6월)	48
8. 슬기로운 환기수칙 포스터	50
9.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04.)종료 안내	51
10.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12판)(고용노동부)	53
11.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콜센터용)(제3판)(고용노동부)	58

1 코로나19 개요

① 정의

- '20.2.11 WHO에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novel corona virus disease)의 명칭을 Coronavirus disease-2019(약어 COVID-19)로 정함

※ '20.2.12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명명

② 임상적 특성

- (주요증상)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있으며,
-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 (전파경로)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기침할 때 생성되는 침방울을 통해 사람 간 전파(비말감염)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 접촉하고 눈, 코 또는 입을 만져 감염(접촉감염)
- (치명률) 세계 0.92%(WHO, '23.5.17.기준), 우리나라 0.11%('23.5.23.기준)
- (중증으로 진행되는 위험 요인) ①65세 이상, ②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③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및 간질환, 면역억제자 등 기저질환 ④암, ⑤비만, ⑥장기 이식, ⑦흡연

③ 진단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
* 한시시행('22.3.14.~별도 안내 시까지)

④ 코로나19 백신

- 코로나19 백신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뉘짐
 - mRNA백신(핵산백신), 재조합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작용기전 >

- 예방접종은 인체의 면역체계를 훈련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후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있지만, 모든 백신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일부 단백질 부분을 인식하고 반응하여 항체를 만들어 내고, 면역 세포중 일부는 기억 세포로 남습니다.
 - 이후 인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활성화되어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합니다.
 - 이러한 기전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고, 중증 환자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합니다.

⑤ 치료

- 먹는 치료제는 현재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있으며, 투약 가능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 처방 가능
 - 1일 2회씩 총 5일간 정해진 용법·용량(팍스로비드: 1회3정, 라게브리오: 1회 4정)에 맞게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

⑥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⑦ 집단방역 4대 중요수칙

- (수칙1)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수칙2)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수칙3)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하기
- (수칙4)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2 목 적

- 본 지침은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3 기본 방향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 계획(사내 협력업체 포함)을 수립함
- 방역관리자는 본 지침 내용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안내·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함

* 인원별, 층별, 구역별, 조직 구성(실별, 센터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인원 지정

-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라

- 사업장 위험도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실시 및 점검함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협력업체,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수립

2 확진자 및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복무관리

- 확진된 근로자가 5일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고

※ 병가 등 약정휴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상황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단, 연차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하게 되어 법위반 소지가 있음)

-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 등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확진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 사업주는 확진환자 등의 회복·격리해제 후 업무 복귀 절차와 보수·휴가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사업주는 복귀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및 연차사용 등에 대해서 사내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 * (재택근무) 취업규칙 등 규정 또는 근로자 동의를 통해 실시 → 코로나 특수성 (전파 가능성 등) 고려 협의로도 가능('21.9월, 재택근무종합매뉴얼)
- * (연차) 별도의 유급병가 부여는 가능, 무급휴가(휴직) 강제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발생
- 사업주는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주는 감염 자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퇴사 강요, 집단적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 (인사상 불이익·퇴사 강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부당해고 등). 다만, 근로자의 감염 이유·경위가 회사의 방역·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 가능
- ※ (따돌림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직장 내 괴롭힘 등)
- 사업주는 복귀 근로자의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
- ※ (코로나19 관련 정신·심리 지원기관) 정신건강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4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 **코로나19 확진자 및**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휴게실 이용 자제하기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확진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 콜센터와 같이 시설 내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이 어려운 경우 가림막 활용하기

5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개인위생〉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근무 시작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 구내식당 이용 시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환경관리〉

-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가능하면 창문을 열어두기, 외부 공기 도입량을 높여 기계환기 하기
- ※ 사람이 많고, 환기 시 바람이 적을수록 더 자주 환기
- 공용 공간 손 소독제 비치
-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통근차량 운영시 운영 전·후 환기, 운영 중 외기 유입
- 통근버스 이용시에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6 회의 · 교육 및 출장 관리

① 회의 및 교육

- 대면회의(교육)를 할 경우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장소로 확보
- 개최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유증상자는 회의(교육) 참석 자제하기
- 개최자는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며 참석자는 수시로 사용
-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② 출장

- **코로나19 확진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
- 개인 차량 이동 시에도 동승자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하기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
- 가능하면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보기
- 출장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장을 중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고 쉬기

1 유연근무제 활용

◆ 유연근무제 주요 내용 ◆

-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및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2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의 **격리권고를 이행한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45천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10만원(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3 가족돌봄 휴가

-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연간 10일 이내, 무급)

* 자녀 백신접종의 경우도 자녀의 양육에 해당되므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4 백신 접종자 휴가 관리

-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시기변경 자제)

※ 위와 같은 백신접종 관련 휴가 부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물론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1 Q&A(고용노동부)

① 휴업 휴가 관련

1. 확진자 격리가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 또는 무급휴가 등을 활용하기보다는 출근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 사업장에서는 확진된 근로자가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 약정휴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상황에 맞는 휴가 부여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업무 수행 등을 위해 부득이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KF94 마스크 필수 착용, 2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도 적극 고려 바랍니다.

□ 정부는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지원제도를 한시적 유지(복지부) 하면서, 아프면 쉬는 문화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아프면 쉬는 문화 홍보 강화, 재택근무 도입 컨설팅 등

② 고용유지지원금

1.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1/2 또는 2/3

- 특별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10, 대규모 기업은 2/3를 지원합니다.

* 시외버스운송업,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23.6.30.)

** 경상남도 거제시(~'23.12.31.)

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 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4.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5.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6.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7.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별로 신청가능합니다.

8.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③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1.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대상은?

- 국내 합법 체류 중인 E-9/H-2 외국인근로자 중 2022.4.13.~12.31. 기간 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 단, 기존에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로서 2022.4.13.~6.30. 기간 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연장합니다.

* 기존 1년 연장자(E-9)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1년)를 받아 50일 추가 연장 시 국내 체류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

2.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우리부에서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추출하여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고, 체류기간이 연장된 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조치하였습니다.

-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신청 가능

-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신고 가능

3.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 우리부에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한 후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후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법무부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처리 결과를 받아 우리부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처리한 후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연락처가 없는 경우 안내 불가)
-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 (처리절차) ①취업활동기간 연장대상자 추출 후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고용부→법무부) ②체류기간 연장 대상 여부 확인 및 연장조치(법무부) ③연장결과 회신(법무부→고용부) ④취업활동기간 연장조치 및 결과 안내(한국고용정보원, 고용부→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5. 코로나19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고용허가신청 등 민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각종 민원신청 및 처리는 EPS홈페이지(www.eps.gp.kr), 외국인고용관리앱, 관할센터의 유선전화·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EPS홈페이지(www.eps.gp.kr)를 통해 고용허가기간 연장, 고용변동 신고,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수 있고
- 외국인근로자는 EPS홈페이지(www.eps.gp.kr)와 외국인고용관리앱을 통해 사업장 변경 신청 및 출국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EPS홈페이지와 외국인고용관리앱에서 송출국 16개국 언어로 지원

6.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 등 체류지원을 위해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개소)로 연락하시면,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과 관할 선별진료소 등에 대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팀에서도 통역원을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연번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1	외국인력상담센터	경기 안산시	1577-0071
2	한국센터	서울 구로구	02-6900-8000
3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031-838-9111
4	김해센터	경남 김해시	055-338-2727
5	창원센터	경남 창원시	055-253-5270
6	인천센터	인천 남동구	032-431-5757
7	대구센터	대구 달성군	053-654-9700
8	천안센터	충남 천안시	041-411-7000
9	광주센터	광주 광산구	062-946-1199
10	양산센터	경남 양산시	055-912-0255

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 번역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번역자료*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고용허가시스템(www.eps.go.kr)에 게시** 및 배포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방역수칙,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안내 등

** 고용허가시스템(www.eps.go.kr)→공지사항

|| 참고 자료 ||

참고1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7-2판, '23.6.1.)에서 발췌

1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핵심 수칙 >

제 1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이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하고, 접종 후 수개월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춥니다.

① 정부가 권고하는 최신 접종 권고사항에 따라 접종을 완료합니다.

② 접종 후에도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제 2 수칙)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합니다. 이 때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하며, 가급적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합니다.

	②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하여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거리(1m 이상)를 유지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④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며,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⑥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벗고(가능하면 개별 공간 또는 야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제 3 수칙)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이유)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	
	①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 고위험군 등과 밀접한 접촉 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③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④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제 4 수칙)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환기를 통해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표면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하루에 3번 이상, 10분 이상씩) 환기합니다. 환기할 때는 가급적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선풍기, 환풍기를 동시에 활용하면 환기 효과가 증가합니다.
	② 자연 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합니다. 또한 가급적 자연 환기를 병행합니다. 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을 상시 가동합니다.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면 오염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③ 냉난방기 사용 시에도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자연 환기합니다. 냉난방기·공기청정기의 바람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합니다.
	④ 일상적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⑤ 소독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청소 및 소독과정의 전·중·후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제 5 수칙)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열이 나거나 인후통, 기침, 가래,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 이때,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에 문의하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을 참고합니다.
	②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고위험군과 같이 있으면 집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히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습니다.
	④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목적의 외출을 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개인방역 보조수칙 : 마스크 착용 >

[1]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
-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3]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KF94(또는 이하 동급)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우선) 권장	사용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때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인 경우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다수가 밀집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장			

[4]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함께 있거나,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단,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자의 동거인은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
-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고위험군(65세 이상,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5]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

- ❶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❷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예외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참조

< 개인방역 보조수칙 : 환경 소독 >

①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감염성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적절한 마스크 등, 필요시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방수성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다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적셔서 자주 사용하는 표면을 닦고 1분 이상 유지한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1,000ml에 5%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20ml를 붓고 (예, 락스 2 뚜껑) 냉수를 생수통에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습니다.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금지함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등)을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사용하는 장난감 등은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 사용합니다.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아이들의 입과 손에 소독제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소독제 성분을 충분히 없애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을 참조하세요.

< 개인방역 보조수칙 : 코로나19 확진자 >

[1]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코로나19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등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 도보나 개인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빠른 회복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안내하는 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2] 다른 가족을 위해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

- 코로나19 확진자는 독방을 사용하고, 방에서 나올 때는 KF94(또는 이와 등급)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식사는 혼자 합니다.
- 방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을 매일 한 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습니다.
- 밥그릇 등 식기, 수건, 침대, 컴퓨터는 가족과 따로 씁니다.
- 가족 모두 알코올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합니다.

[3]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 외출하는 동안에는 KF94(또는 이와 등급) 마스크를 씁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의 방문은 자제합니다.
-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 만나는 사람과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등의 밀접한 접촉을 자제합니다.

[4]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및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 심호흡,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합니다.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앓을 때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세요.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성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확진자가 발열, 기침,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을 때에는 진료를 받으세요.
- 건강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끼다면 의료기관(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⑥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보관하며, 격리 권고 기간 종료 후 배출합니다.
- * 확진자의 폐기물 처리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최신판을 참고하세요.

< 개인방역 보조수칙 :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

[1]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약 89.03% 차지 (2023.5.13. 0시 기준)
-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폐렴구균,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산책 등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2] 아플 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세요.

- 발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습니다. ②이때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에 문의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3]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의 방문은 자제합니다.
- 외출하는 동안, 특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씁니다.
-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 만나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은 가급적 줄입니다.
- 식사 중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합니다.

[4] 스트레스로 힘들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합니다.
- 건강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방역 보조수칙 : 건강한 생활 습관 >

[1]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지킵니다.

-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고 가능한 한 30분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을 통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 간단한 체조, 근력운동 등에 대한 동영상 보는 등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외공간이나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 활동하며, 실내공간은 자주 환기를 합니다.
- 실내에서는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외출하는 경우에는 장갑, 모자, 목도리,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따뜻한 옷을 입어 적정 체온을 유지합니다.
-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수면, 식사, 휴식,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2]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하고 담당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 정기 검진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합니다.

[3]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및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4] 감염병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신력 있는 정보를 이용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 잠자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중요 수칙 메시지】

- (제 1 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제 2 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제 3 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하기”
- (제 4 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중요 수칙 >

제 1 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 | |
|--|---|
| | ①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 | ②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 ③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전파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한 활동 과정에서 방역관리의 책임을 맡습니다. |
| | ④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의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

제 2 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 | |
|--|--|
| | ① 방역관리자는 우리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듭니다. |
| | ② 방역지침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과 상황별 세부수칙 중 적합한 내용을 참고하되, 개인방역 중요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등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③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는 1m 이상 거리 두기, 의심 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주기적인 환경소독 등을 포함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합니다.
	④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구성원이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⑤ 방역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집단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방역지침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⑥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 3 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하기”	
	① 방역관리자는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 및 가까운 의료기관의 연락망을 확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②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인후통, 기침,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과 발열 유무를 확인합니다.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③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군 집단생활시설)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합니다.
제 4 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①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지지하고, 방역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역할 변경, 환경 개선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② 공동체의 책임자와 각 구성원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③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관리·운영·종사자 공통 수칙	이용자 공통 수칙
① 방역 관리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교육 ■ 코로나19 확진자 및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적극 권장 ■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 권장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 (시설 특성에 맞게 배너, 영상, 방송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유증상자 이용 자제, 마스크 미착용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등 - 방역수칙 행정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운영상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방역수칙 준수 - 게시·안내된 방역수칙 준수 협조 - 코로나19 확진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자제
② 마스크 착용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사용

관리·운영·종사자 공통 수칙	이용자 공통 수칙
③ 사람간 거리 유지	
■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④ 손 씻기	
■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하기 - 식·음료 준비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하기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⑤ 환기 및 소독	
■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주기적 환기 - 영업·운영 전·후, 휴식 시간 등 환기 * 사람이 많고, 환기 시 바람이 적을수록 더 자주 환기 - 자연환기 시 선풍기, 환풍기 동시 활용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기계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 냉·난방시에도 가능한 자주 자연환기 병행 - 오염물질 제거 보조용으로 공기청정기 사용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의 세부 내용은 개인방역 중요수칙 및 보조수칙(마스크 착용) 참조

1. 고용유지지원제도

-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 무급휴업: ③ 30일 이상 실시, ④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⑤ 노동위원회 승인

* ▲ 50% 이상(19인 이하), ▲ 10명 이상(99명 이하), ▲ 10% 이상(100명 ~ 999명), ▲ 100명 이상(1,000명 이상)

- ② 무급휴직: ③ 30일 이상 실시, ④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⑤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⑥ 근로자대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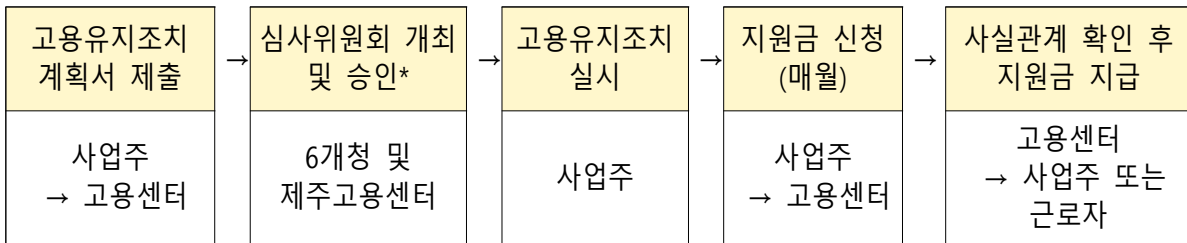
* ▲ 10명 이상(99명 이하) ▲ 10% 이상(100명 ~ 999명) ▲ 100명 이상(1,000명 이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위기 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지원절차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2.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제도

- (개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 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6개월 이상 근속, 단축근무 개시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자, 최소 1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초일~말일 15일 이상 활용)

- (지원요건) ①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월 부지급

- (지원내용)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 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지원대상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단, 임금감소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 (지원절차)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매월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 ☐ (문의)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참조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간소화

- ☐ (개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 유형 >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❶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❷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제 해당) ❸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❹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 지원 기준 >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360만원(1년간)

4.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 ☐ (개요)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직접 지원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 또는 원격근무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근무혁신 이행을 목적으로 인프라를 구축

- ☐ (지원대상)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재택·원격 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 (지원요건) ❶ 고용센터에 사업신청·계획서 제출(구축 예정 인프라 견적서 첨부)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❷ 사업계획 승인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제외), ❸ 취득장비 사용의무기간(3년)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최대 3년 이내, 사업장 자율로 결정) 준수

*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신청 시 반드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도 함께 신청해야 함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신청 여부와 무관)

-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 시설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직접지원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5.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 (추진배경)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한 기업 내 제도화 지원 필요

☐ (목적)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

* 자택 이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근무 방식도 포함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단, 고용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사업장, 산재 명단 공표 사업장 등은 제외

☐ (방식) 전문기관에 위탁, 기업당 인사노무 및 IT 분야 전문 컨설턴트 각 1명씩 매칭

☐ (기간) 1개소당 12주* 소요

* 진단(1~2주) → 제도화 지원(3~8주) → 재택근무 시범운영(9~10주) → 사후관리(11~12주)

□ (기업 참여 모집) '23년 사업장 모집 공고문 확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소식>공지사항에 공고 예정('23년 3월))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suwon@korea.kr) 접수

* 우편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

□ (컨설팅 내용) ①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등 컨설팅, ②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
직문화 개선 교육, ③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

참고3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절차



★★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시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분이 직접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보상금 신청건에 대하여 시도에서 자체 심의 권한을 위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

-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
 -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참고 4

확진환자 및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3-3판, '23.6.1.) 에서 발췌

※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확진환자 관리

가. 양성 확인 통보

- (보건소) 확진환자로 인지되면 신속한 조치를 위해 양성 확인 통지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
 - 양성 확인 통지 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링크, 격리 권고 및 격리 이행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 관련 사항 안내

▶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권고 격리 기간
 -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5일차 자정(24시)**
- 안내사항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격리 이행 확인 절차 안내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안내

▶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메시지의 예시는 'V. 확진환자 관리 → 3.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 나. 격리 권고' 참고

나. 환자 관리

-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6일 차 0시)까지 격리 권고

▶ (예시)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5. 24:00까지 격리 권고

▶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최대 기간 및 전파위험력을 고려함
-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

▶ (참고문헌) Kim J-M, Kim D, Kim E-J. Analysis of viral shedding and positive culture rates of Omicron-confirmed cases according to vaccination status. Public Health Wkly Rep 2022;15(14):871-2.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여부 결정 가능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건강관리)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권고(예시)
-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
 -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특히,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 마스크 상시 착용
 -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합성 등) 자제
 -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집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가급적 필수공간(화장실, 독방 등) 분리 사용 및 혼자 식사하기
 - 다빈도 접촉부위(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는 주기적으로 소독

▶ 상세사항은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조

- (진료)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대면 및 비대면 진료 가능
 -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이 가능하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의 권장(확진자 진료·진단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 등)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및 60대 이상 환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에 진료 및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적극 권고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상세사항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참조

다. 병상 사용 원칙

- (기본원칙) 모든 확진자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음
 - 의료인이 확진자의 임상적 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의 증상 또는 감염으로 인해 직접 촉발된 주증상이 확인되고 입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격리병상 입원
 - 기저질환 또는 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필요시 일반격리병상·일반병상 입원(자율입원)

- (입원필요성판단) 코로나19 임상증상에 대한 치료행위로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처치시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아 음압격리병상이 필요한 경우(지정격리병상 입원 기준 충족)를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인정함
- 입원기준 충족 사례에 대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 준중증 병상 입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을 참고하여 중증도를 분류함
- 입원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실제 중증도에 맞게 병상을 사용해야 하며,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 의료기관에 퇴실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음

[지정격리병상 ▶ 입원 기준 ^(별)]	
▶ 전담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 중증도 분류 기준 상 중등증 ▶ 이상의 코로나19 증상 치료행위(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	
▶ 비관산소치료 또는 산소마스크 사용	
○ 처치 시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아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 경우	
- (고농도 에어로졸 상황) 기도삽관, 기관절개술, 기관지내시경, 심폐소생술 등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

단계	정의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 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중등증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	
8	사망(death)	사망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기준 (대한중환자의학회)**

-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①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②,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자^③
 - ① 인공호흡기·에크모·CRRT 등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등
 - ② (예)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곧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
 - ③ (예) 폐렴이 확인되었고, 산소 요구량이 비관 분당 5L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환자 상태,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준중증 병상 입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

-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
 - 1. 중환자실에서 급성기치료 후 집중감시가 필요한 환자(step-down)
 -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비강캐놀라 O₂ 5리터/분 이하에서 SpO₂ ≥ 94%로 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은 경우
 - 2. 중등증 병상에서 치료종인 환자 중 집중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step-up)
 - 급성호흡부전으로 고유량산소요법이 필요한 경우
 - 3. 기타 주치의가 준중환자실 집중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중 응급수술/시술이 필요한 경우, 다학제 진료를 통한 치료/평가가 필요한 경우
- ※ 환자 상태,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입원절차)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응급실로 내원하여 처치 또는 검사 후 해당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일반의료체계 동일)
 - 지정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은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병상으로 자체 수용, 그 외 사례는 일반격리병상·일반병상으로 수용
 - 지정격리병상 미보유 의료기관은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정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에 직접 전원 의뢰 가능

- 시·도 환자관리반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지정격리병상에 자체수용한 확진자 현황을 사후 모니터링하여 병상 상황을 관리해야함

▶ 수용 즉시 실시간 보고 또는 일일 보고 등 각 지자체별 모니터링 방침 제정

- 중증 환자의 의료기관 간 전원이 필요할 경우 전원 지원
- 병상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권역별 공동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방안 필요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가. 격리 권고 대상

- 확진자로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나. 격리 권고

- 양성 확인 통지 문자에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링크, 격리 권고 및 격리 이행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의 안내 제공

[양성 확인 통지 문자 예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자 통지 이외의 상황에서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가능)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positive(+))으로 확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강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3-00-00 ~ 2023-00-00 24:00 기간동안 격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33700125/159792275> (※ 제출 후 수정 불가)
2. 확진자가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위 권고에 따라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신청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용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따라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희망할 경우 본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위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000 보건소 전화 (000-000-0000) 및 방문(대리가능)을 통해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격리참여자 등록이 되지 않거나 본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가 권고에 따른 격리를 이행할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격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로 공동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격리참여자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코로나19 입원자의 경우 입원확인서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을 위한 격리참여자 등록 등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6. 확진자의 동거인 등(밀접접촉자)은 본 문자를 공유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격리참여자 등록이 의무는 아니나, 격리 종료 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희망자는 격리 증빙을 위해 격리참여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함

- **(온라인 신청)**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 링크를 따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
- **(역학조사중 신청)** 자기기입식 조사서 미입력 확진자 대상 보건소 확진자 조사 중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전화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역학조사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신청 기한)**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 **(공동격리)**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공동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및 지자체가 인정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확진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 가능

▶ 공동격리참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2인까지 인정

라. 격리참여자 명부 등록 및 관리

- **(보건소 역학조사 부서)**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 미입력 확진자 대상 확진자 조사 수행시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접수 및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등록
- **(보건소 격리관리 부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격리참여자관리」 항목에서 격리참여자 명부 확인, 전화·방문 신청자 추가 등록 및 명부의 모든 격리참여자에게 등록 확인 문자 발송

▶ (격리참여자 등록 확인 문자 예) 귀하는 권고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참여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격리참여자는 격리기간 동안 ①병·의원 방문, ②의약품 구매·수령, ③임종, ④장례, ⑤시험, ⑥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사유로 무단 외출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건소 격리관리 부서는 격리참여자 본인 및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명부 확인 등의 증빙을 제공

마.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방법

- **(격리장소 및 방법)** 격리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오염된 물품은 사용 전후 소독)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 **(격리 중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가급적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방문을 권장하며, 진료의 시급성 또는 대면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거나 격리기간 이후로 진료 연기 권장
- *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 진료(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실시(병원급 의료기관 제외,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종료 및 시범사업 수가 적용 등)

◆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개요) 자율치료자의 의료상담 대응을 위해 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운영 종료
- ** 광역자치체 주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지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

▶ (인력) 간호사 인력을 주축으로 구성하며, 의학적 자문을 위해 의사 1인* 상시 배치**

- * 원내 인력 활용, 겸임 가능
- ** 의사의 진찰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기능) 자율치료자 대상 의료상담 및 처방(먹는 치료제 등), 병상 배정 요청 접수 시 대응 등

◆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개요) 자율치료 처리 절차 등 행정지원 문의 대응 위해 지자체 **자치행정 또는 재난안전 부서에 설치**
- (운영시간) 자율 설정
- (기능)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문의 대응. 의료상담은 하지 않으나, 비상 상황 대응 위한 의료기관·응급실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임종, 장례의 경우 당일에 한해 24시간 이내 복귀**

- (임종·장례 대상)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확진자의 시험응시 및 투표 참여는 별도 지침(문서)에 따름

▶ 격리 중 생필품 구입은 가급적 온라인 구매 및 배달 이용을 권장

바. 권고에 따른 격리기간

○ (격리참여자) 양성 확인 통지 문자에 기재된 격리기간

▶ 보건소 검사 건은 '의뢰확정일(확진일)', 의료기관 검사 건은(RAT) '진단일'을 격리시작일로 하여, 검체채취일(의료기관 RAT검사의 경우 진단일) 포함하여 5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

구분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보건소 검사 건	의뢰확정일(확진일, 양성결과확인일)	검체채취일 + 4일
의료기관 RAT검사▶ 건	진단일(확진일, 검체채취일)	진단일 +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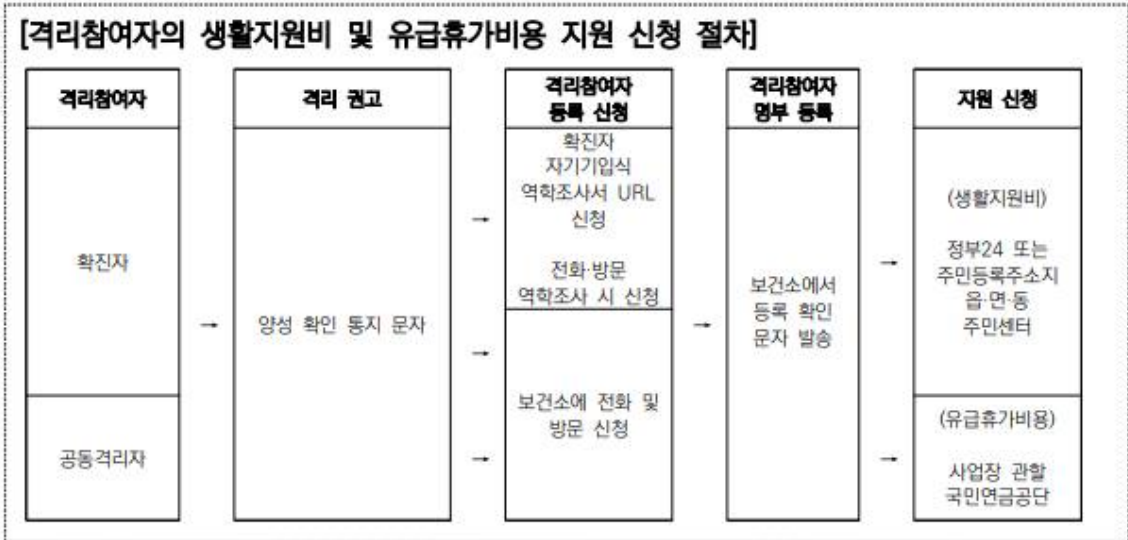
▶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되는 경우는 이와 다를 수 있음

○ (공동격리참여자) 공동격리참여자 신청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격리참여자의 격리종료일까지

사.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 대상)**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동안 성실하게 격리를 이행한 신청자 중 다음의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생활지원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신청 기한)**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 **(지원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는 정부24(홈페이지 및 앱)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원칙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5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5판」의 규정을 따름

□ 감염병 예방법

<참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질병관리청 고시

<참고>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5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
- ② 생활지원비 금액 :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 단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참고6

콜센터 안내

□ 코로나19 콜센터(1339)

- ▷ 주요 상담 기능: 질병정보,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고
- ▷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 ▷ (외국어 상담) 한국어 상담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은 ❶한국관광공사(☎1330) 또는 법무부 ❷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와 3자통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

<1330 관광통역 안내전화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8개국어)>

운영시간	언어
09:00~22: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일본어(日本語)
09:00~18:00	베트남어(Tiếng việt), 타이어(ภาษาไทย), 말레이어(بهلس مليسيا), 러시아어(Русский язык)
* 주요상담기능: 숙박예약, 교통, 문화, 입장권, 외국어통역 등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20개국어)>

운영시간	언어
(평일)09:00~18: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타이어(ภาษาไทย), 일본어(日本語), 몽골어(Монгол),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프랑스어(français), 방글라데시어(বাংলা), 파키스탄어(اردو), 러시아어(Русский язык), 네팔어(नेपाली), 캄보디아어(ភាសាខ្មែរ), 미얀마어(မန်မာစာ), 독일어(Deutsch), 스페인어(español), 필리핀어(Tagalog), 아랍어(العربية), 스리랑카어(සිංහල)
(평일)18:00~22: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평일)22:00~익일09: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 코로나19 관련 상담(선별진료소 등)만 제공
(토·공휴일)24시간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 코로나19 관련 상담(선별진료소 등)만 제공
* 주요상담기능: 외국인 행정 및 생활종합안내(출입국, 비자, 체류, 귀화 등)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관리 의무) 의무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게시 및 안내 의무
-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밀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가능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 과되지 않음	• 24개월 미만인 영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상황	• 감염취약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응급 구조활동 등)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방법

-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
- 냉·난방기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는 필요
- 선풍기, 환풍기를
동시 활용하면 환기 효과 증가

환기장치 등 기계환기 방법

- 환기장치는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 최대한 하고,
내부 순환모드는 자제
- 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면
오염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효과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 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의 환기는 필요
- 제품에 표시된 적용 면적을 확인하여 대상 공간에 맞는 용량의 공기청정기 사용
*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준용량 대비 1.5배 이상의 용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
- 공기청정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
 일반적으로 집진필터(헤파필터)는 6개월~1년 사이에 교체,
 제조사의 교체 주기 및 필터 오염상태에 따라 변경



실내 환기 생활화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해요!

□ 배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3. 6. 1. 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 (심각→경계)하고, 방역조치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 현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04.)을 적용한 “건강진단 시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 제외”는 ‘23. 6. 30.일 기준으로 종료하고자 함

□ 적용대상: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의 폐기능·치아부식증 검사 대상 근로자

□ 변경내용: 폐기능 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

- (종전)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검사 실시(붙임 검사방법 참고)
- (변경) ‘23. 7. 1. 이후부터 실시하는 배치전·특수 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 치아부식증검사는 예외없이 실시
- 다만,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 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근로자·사업주는 진단기관에 ‘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 적용시점: ‘23. 7. 1.

❖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폐기능 검사: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 비특이기도 과민검사

**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염소가 있음

- (폐기능검사)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 활용 권장), 호흡음 청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

- 다만,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폐기능검사 대상 유해인자 27종】

1.글루타르알데히드, 2.디에틸렌트리아민, 3.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인산), 4.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5.베릴륨, 6.코발트(분진 및 흡에 한정함), 7.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 8.톨루엔2,6-다이소시아네이트, 9.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무수 프탈산), 10.헥사메틸렌 다이소시아네이트, 11.황화나켈, 12.(무기)주석과 그 화합물, 13.마넛알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14.곡물 분진, 15.나무 분진, 16.니켈 및 그 화합물, 17.광물성 분진, 18.면 분진, 19.석면분진, 20.산화철(분진 및 흡에 한정함), 21.유리섬유 분진, 22.안티몬과 그 화합물, 23.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24.용접 흙, 25.카드뮴과 그 화합물, 26.크롬과 그 화합물, 27.텅스텐과 그 화합물

-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

- 다만,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 조직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예방 조치하고 실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2판)’ 개정 내용

- ☐ **(교육형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에 의거, 모바일 교육 및 실시간 화상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지침 개정
-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종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 **(기관평가 불이익 금지조치)**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되어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 평가 불이익 금지 조치사항 삭제
- ☐ **(확진자 발생 시 조치)** ‘자율’ 및 ‘권고’ 기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관련 지침 수정
 - * 격리를 전제로 한 ‘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 주요 내용’ 삭제
- ☐ **(시행시기)** ‘23. 6.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 면제)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 6. 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 6.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 9. 1.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 6. 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 일자가 '22. 7. 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20. 9. 8.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기타 사항

- (모바일 교육 및 실시간 화상교육 상시 허용)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시까지 허용하였던 모바일 교육 및 실시간 화상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을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에 따라 상시 허용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종료)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공통사항

○ 인원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로 행사·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

* 단, "시설 내 밀집도 완화" 원칙 하에, ①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②좌석한 칸 비우기 또는 ③칸막이 설치 또는 ④시설 특성에 맞게 교육생 간 충분한 간격 유지 환경 조성 등을 사업장(교육기관 포함) 특성에 맞게 적용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 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 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마스크 착용> 교육기관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23.3.20.)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붙임1)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5일간 격리 권고

*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 자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상시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환기 설비를 가동

- 창문 환기 시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을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안전보건교육기관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 (유증상자) 교육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교육생(유증상자)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
- (확진자)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격리 권고, 사업장 소독 및 교육생들에게 확진환자 발생 사실공지
-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기관은 교육생인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의 격리 권고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한 교육생으로서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미복귀 시 출석으로 미인정)

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4

시행시기

- (시행시기) '23. 6.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 사업장(교육기관) 개요

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		연 락 처	
주 소		연 락 처	
대 표		근로자수(남/여)	명(/)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훈련 환경 및 방역 상태	1) 예방안전수칙(코로나 19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2) 교육생 밀집도, 환기상태, 교육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하고 안내	☐ 예 ☐ 아니오	
의심증상 모니터링 등	1)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교육생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위생 · 청결 관리	1)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세정제 비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	☐ 예 ☐ 아니오	
	2)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 예 ☐ 아니오	
	3)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 예 ☐ 아니오	

※ 점검결과 "아니오"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2023 . .

사업장명(교육기관) 명:

성 명

(인)

대 표 자 명:

성 명

(인)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안내 및 교육된 지침은 게시하여 근로자가 상시 볼 수 있도록 조치

2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 백신 접종자 휴가 관리 >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고
 -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다음날 1일, 반응 지속 시 2일)
- 사업장 내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3 확진자 및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복무관리

- 확진된 근로자가 5일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 권고
 - ※ 병가 등 약정휴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상황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단,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하게 되어 법위반 소지가 있음)
-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 등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 **코로나19 확진자** 및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휴게실 이용 자제하기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콜센터와 같이 시설 내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이 어려운 경우 가림막 활용하기

< 가림막 설치시 고려사항 >

<재질·형상>

- 투명재질로는 유리, 아크릴, PC(폴리카보네이트), 불투명 재질로는 종이(1인 휴대용) 등으로 설치하기
- 가림막 형상은 H자형(2인용), +자형(4인용), 고정식·이동식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 설치 및 관리방법 >

- 가림막 높이는 가급적이면 60~80cm이상으로 설치하기
- 가림막 소독시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등)으로 표면 닦기
*세부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조

< 주의사항 >

- 가림막 효과를 위해 냉난방기 풍향이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개인위생〉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근무 시작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 구내식당 이용 시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환경관리〉

- 손이 자주 닿는 곳(공용물품, 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손잡이,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가능하면 창문을 열어 두기, 외부공기 도입량을 높여 기계환기 하기
 - ※ 사람이 많고, 환기 시 바람이 적을수록 더 자주 환기
- 공용 공간 손 소독제 비치
-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통근버스 운영시 운영 전·후 환기, 운영 중 외기 유입
- 통근버스 이용 시에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6

회의 · 교육 및 출장 등

〈회의·교육〉

- 대면회의(교육)를 할 경우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장소로 확보
- 개최자(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 자제**
- 개최자는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는 수시로 사용하기
-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출 장〉

- **코로나19 확진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하기
- 개인 차량 이동 시에도 동승자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가능하면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보기
- 출장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장을 중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고 쉬기

7

기숙사 관리

- 공용공간 손 소독제 비치
-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1m)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예방 체계 마련	1)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지정 ☐ 미지정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하고 안내 및 교육된 매뉴얼 게시	☐ 실시 ☐ 미실시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예 ☐ 아니요	
복무 관리	1) 코로나19 확진자 및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 관리자에게 알리고 휴가(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 ☐ 아니요	
업무 공간 및 구내 식당 · 휴게실 관리	1)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이상) 하기	☐ 예 ☐ 아니요	
	2) 코로나19 확진자 및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 휴게실 이용 자제하기	☐ 예 ☐ 아니요	
	3)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 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예 ☐ 아니요	
	4) 콜센터와 같이 시설 내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이 어려운 경우 가림막 활용하기	☐ 예 ☐ 아니요	
소독 및 위생 · 청결	1)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	☐ 예 ☐ 아니요	
	2) 사무실, 작업장 등을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이상 환기	☐ 예 ☐ 아니요	
	3) 공용공간 손소독제 비치	☐ 예 ☐ 아니요	
	4) 통근버스 운영시 운영 전·후 환기, 운영중 외기 투입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5) 통근버스 이용 시에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회의·교 육, 출 장	1) 대면회의(교육)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참석자 간 거리 유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유증상자 참석자제, 손소독제 비치)	☐ 예 ☐ 아니요	
	2) 출장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장을 중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고 쉬기	☐ 예 ☐ 아니요	
기숙사 관리	1) 공용공간 손소독제 비치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2)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1m)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 점검 결과 “아니오”, “미지정”, “미실시”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 작성

통근 차량 또는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없음”에 일괄 Check